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

1. 경 과

의안 제221호로 2013년 6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 제외(안 별표 1)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규정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O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부과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소 제외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제4호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중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을 제외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8.6>

-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4.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